##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02 발의연월일: 2020. 7. 3.

발 의 자:임오경·김남국·전용기

오영환・박 정・황운하

윤재갑 · 최혜영 · 박성준

김경만 · 이수진 · 정청래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스포츠클라이밍은 2018 자카르타-팔렘방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첫 채택된 후 해당 대회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금메달 1개, 은메 달 1개, 동메달 1개를 획득하였음. 최근 스포츠클라이밍을 즐기는 생 활체육 동호인들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며, 2020 도쿄 하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도 채택되어 메달 획득이 유망한 종목임.

하지만 스포츠클라이밍이 국내 및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포츠클라이밍이 가능한 '실내·외 인공암벽장'은 체육시설이 아닌 조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신고되어 설치되고 있음.

이에 체육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이 확보되지 않아 종목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보상에 대한 책임을 논하기 어려운 상황임. 따라서 '실내·외 인공암벽장'을 체육시설업 중 '신고 체육시설업'에 포함시킴으로써 체육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강사가 배치되도록 하고,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받아 동호인들이 안심하고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음. 이에 동 법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0조제1항제2호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267호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 중 "체육교습업"을 "체육교습업, 인공암벽장업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7267호 체육시설의	법률 제17267호 체육시설의
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	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
제10조(체육시설업의 구분・종류)	제10조(체육시설업의 구분・종류)
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	①
구분한다.	<u>.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신고체육시설업: 요트장업,	2
조정장업, 카누장업, 빙상장	
업, 승마장업, 종합 체육시설	
업, 수영장업, 체육도장업, 골	
프 연습장업, 체력단련장업,	
당구장업, 썰매장업, 무도학원	
업, 무도장업, 야구장업, 가상	
체험 체육시설업, <u>체육교습업</u>	<u>체육교습업,</u>
	<u>인공암벽장업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